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가단2807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강주영, 박근희, 오유미

피고B

변론 종결2022. 12. 15.

판결 선고2023. 1.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6. 1.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31. 접수 제595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7. 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29,4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6. 7. 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0. 20. E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9. 10.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0. 12. 14.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35,643,440원(원금 23,263,563원)이다(이하 위 대출금채권을 가리켜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C은 2016. 1. 2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31. 접수 제59573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은 시가 6,9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F조합	2009. 7. 10.	11,000,000
G조합	2012. 9. 20.	59,400,000
H은행 산곡동	2014. 1. 22.	48,200,000
이 사건 채권	2015. 7. 7.	29,400,000
합계		148,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의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¹⁾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부채가 많은 것을 몰랐고 실제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고은설

별지

1)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선순위근저당권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이 있음.